

## 교회의 정관, 그 효용성과 한계에 대하여

모든 단체는 내부 규범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명시적인 규정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없는지의 차이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전에는 명시적인 규정을 만들지 않고 불문 규율로 단체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단체들이 성문 규정을 만들고 그에 따라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요즘에는 동창회나 계에도 '회칙'이나 '규약'이 존재한다. 그런데 최근까지도 교회는 독자적인 내부 규범을 제정하지 않았다. 이는 교인들이 신앙공동체인 교회 내에 법규범이 존재하는 것에 막연한 거부감을 가지기도 했고, 또한 교회는 교단의 헌법에 따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각 교단의 경우 오래 전부터(장로교의 경우 1919년에 권징조례와 예배모범을 채택하였다) '헌법'을 제정해 왔는데, 대부분의 '헌법'이 서구 교회의 헌법을 참조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회 내의 주요 규범으로 일찍부터 자리 잡았다.



그런데 요즘은 교회에서도 자체 정관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직접적인 이유로는 교회 내의 재산이 증가하고 교인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교회 내 의사 결정을 민주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된 점을 들 수 있고, 간접적인 이유로는 수년 전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모범정관'을 제정하여 배포한 것과 최근 교회 내 극심한 분쟁을 겪은 '분당중앙교회'가 전국 교회를 상대로 정관 갖기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교회가 정관을 가지는 것은 바람직한 일로 평가할 수 있다. 어떤 단체이든지 내부 규범을 문서화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관의 내용이다. 교회가 자체적으로 제정하는 정관에는 교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고, 그와 정반대의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 위 '모범정관'에는 교인들이 목사를 해임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 있는데 반해, '분당중앙교회'가 제정한 정관에는 십일조를 교인의 의무로 규정하고 십일조를 내지 않는 교인은 당회의 결의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 있었다.

이처럼 정관에는 신앙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무분별하게 포함될 수 있는데, 문제는 성문화된 규범이라는 이유로 자치적 법규범으로 인정되어 교인들에 대해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5060 판결). 교회 재산은 교인들의 총유로 인정되는데(교회 자체는 법인이 아니어서 교회 자체의 재산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통상 교회 재산이라고 부르는 것은 교인들이 집단적으로 소유한 것, 즉 총유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한 총유 재산의 처분 시 어느 기관에서 결의해야 하는지를 비롯하여, 목사의 청빙이나 해임 시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등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

라 달라진다. 이처럼 일단 어떤 내용이면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면 그것은 일차적으로 법원의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정관은 교회 내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분쟁을 격화시키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먼저 교회 정관의 효용성과 한계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정관의 효력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 세 가지이다. 하나는 정관에 교회 전통과 맞지 않거나 매우 비민주적인 조항이 있을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고 할 때 갖추어야 할 요건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며, 마지막 하나는 교단 소속 교회에 있어서 교회의 정관과 교단의 '헌법'은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것이다.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 단체 내부의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등 사회 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이거나 결정 절차가 현저히 정의에 어긋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된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1다 29026 판결). 그러나 자치적 법규범인 정관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개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필요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게 침해 내지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고, 또한 그 내용이 강행법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는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 따라서 그 제한에 위반된 정관은 무효가 된다(대법원 2002. 02. 22. 선고 2000다65086 판결). 법원은 위로금의 지급을 둘러싼 노동조합과 조합원 간의 분쟁에 관하여 노동조합을 상대로 일절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신분보장대책기금관리규정'이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 헌법 및 법원조직법의



**강문대**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졸업, 사법시험을 거쳐 변호사로 활동하며 (전)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전)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 등을 겸임하였다. 현재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자문위원이자, 국민연금공단 심사위원회 위원, 인하대 로스쿨 지도변호사로 섬기고 있으며, 저서로는 『비정규직법』(공저), 『교회, 가이사의 법정에 서다』와 다수가 있다.

규정과 부제소 합의 제도의 취지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았고(위 판결 참조), 관리처분계획에 반하는 내용의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정관 규정도 무효라고 보았으며(대법원 2009. 06. 25. 선고 2007다28642 판결),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가결정족수에 관한 정관 규정도 무효라고 보았다(대법원 2014. 03. 27. 선고 2011두3692 판결), 법원의 이런 판단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교회 내 정관도 헌법과 관련 법률에 위반되거나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무효로 판단될 것이다. 교회 내 정관은 아니지만 법원은 목사 불신임 투표를 금지한 모 교단의 헌법시행규정의 효력을 인정치 않고 그 투표 절차를 인가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비합40), 소속 교단의 규약에 탈퇴에 관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소속 교단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558 판결 참조). 교회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모 교단의 헌법시행규정도 우리나라 헌법에 반하는 것이어서 무효로 인정될 것이다. 그런데 정관의 특정 규정이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소(訴)로 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정관은 단체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법규범(자치법규)인데, 확인의 소(訴)로는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대법원 2011. 09. 08. 선고 2011다38271 판결).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그 정관의 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로 인해 생긴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訴) 등을 제기해야만 한다(예를 들어 목사 불신임 투표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 자체를 무효 확인해 줄 수는 없고 대신 그 규정이 무효임을 전제로 불신임 투표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정관의 제정과 개정 요건에 대해 살펴보면, 우리 민법은 사단법인의 경우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0조). 교회는 법률상 비법인사단에 해

당하고(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 중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원칙적으로 '비법인사단'에 준용되므로(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비법인사단이 정관을 변경하려면 총 구성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회의 경우 전체 교인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전체 교인이란 세례를 받은 교인을 의미한다. 교인의 나이가 18세 이상이어야 하는지는 교단 헌법에 공동의회의 구성원의 범위를 나이에 따라 제한해 놓은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오랜 기간 교회에 출석하지 않은 교인도 교인의 범위에 포함하는지도 교단 헌법에 실종교인 또는 의결권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정관을 변경할 때의 요건은 이와 같은데, 정관을 처음 제정할 때의 요건은 민법에 정관의 제정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다. 민법에는 사단법인에 대한 조항만 규정되어 있고, 비법인사단에 대한 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사단법인의 경우 설립 시부터 반드시 정관을 제정해야 하고 정관의 제정은 설립자 몇 명이 의사를 합쳐서 하므로 특별히 정관의 제정 요건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 그에 반해 비법인사단의 경우 설립 시에는 정관을 가지고 있지 않다가 나중에 정관을 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 문제를 교회에 국한해서 살펴보면, 정관이 없는 교회도 교단의 헌법을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인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불문 규율은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정관을 새로 제정하는 것은 사실 기존의 규범을 변경하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도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전체 교인의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법원은, 특정 교단에 가입한 교회는 교단이 정한 헌법을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소속 교단을 변경하는 것은 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아 소속 교단

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 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한다고 보았고(대법원 2006. 0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교단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 교회가 종전의 독립 교회 상태를 벗어나 특정 교단에 가입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 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교회 규약으로 정해졌거나 정해져야 할 사항의 변경을 초래하게 된다고 보아 마찬가지로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대법원 2006. 06. 09. 자 2003마1321 결정), 법원의 이러한 판단은 위와 같은 입장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회의 정관과 교단의 헌법의 관계를 살펴보겠다. 이와 관련해서는 교회가 교단의 헌법을 교회 자신의 내부 규범으로 받아들였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 원래 법인이거나 비법인사단인 어느 단체가 상급 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그 단체의 내부 규정에 상급 단체의 규칙이나 정관을 자신의 정관으로 받아들인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상급 단체가 제정한 규칙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05. 27. 선고 2006다72109 판결). 그러나 교회의 경우 교단에 가입할 때 교단의 헌법을 승인하고 그에 따르겠다고 서약하고 있으므로 교단에 속한 교회는 교단의 헌법을 교회 자신의 내부 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정관이 별도로 없는 경우에는 교단의 헌법만이 교회 내부의 규범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에 정관이 별도로 존재하는 경우이다. 교단의 정관과 교회의 헌법 중 어느 규정이 더 우선적으로 적용되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법원은, 각 교회가 소속된 특정 교단은 교리의 내용 등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존립 목적으로 한다고 전제 한 뒤, 교단의 이러한 존립 목적에 비추어 보면 개별 교회의 자율권은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

았다. 즉, 교단이 각 교회의 자율권을 제한 없이 인정 하면 해당 교단의 고유한 특성과 교단 내에서의 종교적 질서 유지라는 교단의 존립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다고 본 것이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8990 판결). 그렇다고 교단이 개별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개별 교회는 소속 교단과 독립된 비법인사단이고 교단은 종교적 내부관계에 있어서 개별 교회의 상급 단체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대법원 2006. 0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그렇기 때문에 개별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을 구분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 구분이 쉽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법원은 개별 교회가 만든 목사에 대한 '재신임 규약'은 교단 헌법에 우선하여 적용되지만(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1. 16. 선고 2010가합5664 판결), 개별 교회가 만든 '장로수칙'은 교단 헌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보았다(인천지방법원 2009. 9. 4.자 2009가합1593 결정).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교단이 개별 교회 교인들의 목사 불신임을 허용하지 않는 것도 개별 교회의 독립성이나 종교적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처럼 교회 정관은 한편으로는 교회 헌법에 의해 제한 당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회 헌법을 보충한다. '교회 개혁실천연대'든 '분당중앙교회'든, 교회에 정관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은 당연히 후자의 역할에 더 주목한다.

애초 교회 정관은 교단 헌법이 미처 그리고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교회 내의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식되었다. 그렇게 호출된 '교회 정관'이 교회 내의 민주성을 약화시키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하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평안을 추구하지만 세속의 모든 것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신앙의 역설은 정관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니, 정관은 교회 신앙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